



새로운 도전과 대응(Ⅱ)

-DDA 농업협상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가?-

2. 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2-3. 감축대상 국내보조

〈감축방식〉

- 케언즈 그룹과 일부 수출개도국은 국내 보조금을 품목별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
-총액 감축방식으로 하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보조를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은 총액 감축방식이 보조금 감축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는 품목간 지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이 보장되고, 각국의 다양한 농업현실과 농산물의 예측 불가능한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AMS의 90% 이상이 쌀에 할당 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감축방식이 도입 될 경우의 영향은 앞으로 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 가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UR협상 기준년도 품목별 감축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 억원)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계
보조액	21,093	523	729	226	24	22,595

2-4.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허용보조는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발 등 하부구조 건설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등 구조조정 투자지원, 부채경감 지원, 논농업직접지불을 비롯한 생산증립적 소득지원 등 많은 사업이 해당됩니다.

농업협상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래 허용보조의 범위와 요건을 둘러싸고 보조금 감축약속 우회 방지를 위해 규율강화를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과 NTC를 반영하기 위한 신축적 개선을 주장하는 수입국 그룹 간에 대립 구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수출국은 허용보조가 무역왜곡 효과가 없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국은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고려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과 개도국들은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책의 범위를 축소하고 허용보조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 할 것을 주장.
-현행 허용보조의 유형과 각 유형별 요건이 느슨하게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농산물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도 허용보조로 분류하는

등 남용의 여지가 많음

-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등의 NTC 국가들은 허용보조의 범위와 요건이 보다 신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현행 허용보조 조항에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 발생

이러한 대립구도는 금년 9월 국내보조 분야 Modality 협상에서 양측이 상반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더욱 가시화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핵심주곡의 생산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소규모 가족농의 지원을 위한 조치를 허용보조에 포함시킬 것과 현행 허용보조 조치 중 소득안전망 지원, 자연재해지원, 탈농지원, 환경보전지원 등의 요건완화 제안
- EU는 동물복지와 생산에 있어 국제수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허용보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소득안전망지원 및 자연재해지원에 대한 요건완화 제안
- 케언즈그룹은 현행 허용보조 조치 중 생산자에 대한 직불, 비연계 소득지불, 소득안전망지원, 구조

조정투자지원 등을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여 허용 보조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허용보조에 대한 요건강화와 지원액에 대한 한도 설정 주장.

2-5. 수출경쟁

시장개방 문제, 국내보조금 문제와 더불어 핵심적인 협상분야의 하나인 수출경쟁 분야의 경우 수출보조,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및 수출세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수출보조는 국제시장의 왜곡효과가 가장 크고 직접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이로 인해 농산물 수출을 위한 경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 있는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수출 보조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수출보조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EU가 모든 형태의 수출지원 조치가 동등하게 다뤄진다면 수출보조 감축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EU의 태도에 따라 협상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EU는 수출보조 철폐에 반대하면서 수출보조 효과가 있는 수출 신용 등과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관세, 국내보조 등 다른 분야와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케언즈그룹 : 이행 첫해 50%감축, 잔여 50%를 3년간 (개도국 : 6년) 균등 감축·철폐

-미국 : 5년간 균등 감축?철폐

*UR협상 방식 : 기준년도("88~"90) 재정지출의 36%감축(개도국 : 24%), 지원물량의 21% 감축(개도국 : 14%) 또한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및 수출세 등은 UR 협상에서 완전한 규범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로 농업협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이에 대한 규율을 재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율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각국의 의견이 갈라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구체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수출신용 : 규율대상 수출신용의 정의, 구체적 신용공여 조건 등
- 식량원조 : 식량원조의 정의 및 형태, 식량원조가 수출보조 감축 약속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안 마련 등
- 수출국영무역 : 규율대상 범위, 가격차별 행위로 인한 폐해 방지 방안 마련 등
- 수출세 및 수출제한 : 대상 농산물, 구체적 규율 마련 등

2-6. 개도국 우대

144개 WTO 회원국 중 3/4이상의 절대 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그들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UR협상에서도 개도국들에게는 관세 감축 폭을 줄이거나 이행 기간을 길게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주었고 우리나라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DDA협상에서 목소리가 더 커진 개도국들은 이러한 부담 경감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이 끝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더욱 좁아졌다고 주장하며 개도국 우대의 실질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선진국들도 원칙적으로는 동조하고 있어 이번 DDA협상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확대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분야 등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양허협상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유지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개도국 우대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Modality 협상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UR협상의 경우 : 이행기간은 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은 개도국이 선진국의 2/3 수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나, OECD 가입, 높은 소득수준, 첨단 제품의 수출, 고도화된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도국지위 유지는 우리나라의 추가적 의무 부담 폭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과제 이므로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개도국 지위 유지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정리
- 양허협상 단계에서 주요국을 상대로 집중적인 설득작업 등

2-7.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s)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란 무역을 통해 이를 수 없는 농업이 지난 고유한 역할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력유지 등 사회적 혹은 문화적 가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이를 흔히 NTC그룹이라고 부름) 농업협상 과정에서 NTC를 강조하는 그룹은 관세나 보조금을 급격히 감축한다면 국가에 따라서는 농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져 NTC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TC는 각국의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중요시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은 현재 진행중인 Modality 협상 논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농촌개발, 농촌공동체 유지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가리켜 "NTC"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 일본 :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
- EU : 환경보전, 동물복지, 식품안전 강조
- 스위스 : 환경보전 강조

반면 수출국들은 NTC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에 무역자유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며, NTC는 단순히 농업협상의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Modality 협상에서 NTC를 별도의 주제로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하여 Modality에 NTC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상 논의과정에서 NTC의 구체적인 반영방안을 문서로 제출하였고, Modality 관련 문안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03년 1월말에 NTC관련 고위급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협상대응은?

정부는 농업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98년부터 농림부내에 「WTO 농산물협상대책단」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협상대응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소비자 단체·언론계·학계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민관합동포럼을 운영하고, 시·도 순회 설명회·공청회·토론회·인터넷, E-mail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협상동향을 정확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대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협상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담당자들은 UR협상때부터 경험이 있거나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 위주로 장기배치하여 활용하고, 국내외 통상전문 변호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책〉

- "98년 4월부터 「WTO 농산물협상대책단」을 설치하여 협상 준비
- UR협상때부터 경험이 있는 통상전문가를 협상담당자로 배치
- 국내외 통상전문변호사, NGO, 언론계, 학계 등으

로부터 자문

- 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
 - 국회 및 NGO와의 협조체제 유지
- 현재 진행중인 세부원칙(Modality) 협상단계에서는 수입국간 공조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원칙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리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금년 9.2~6 Modality 협상에서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제를 제출하여 수입국, 개도국으로부터 호응을 받음
 - 9.23~27 국내보조분야 논의에서 허용보조의 범위확대와 요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 허용보조의 규율 강화를 주장해온 케언즈그룹에 적극 대응
 - Modality 협상 관련 우리나라 세부입장을 담은 구체적인 종합제안서 제출(2002. 12)

또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의 속성상 우리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일본·EU·노르웨이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수입국들(NTC그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98년 3월부터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5개국이 정기적으로 만나 공동 대응(2000년부터 모리셔스 합류)
- 6개국 공동으로 4차례에 걸친 NTC 국제회의 개최
- 2003년초 우리나라 주관으로 NTC 고위급 회의 개최 추진

아울러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도 고위급 대화채널을 유지해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내년 3월말 수립예정인 Modality 협상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금년 11~12월에는 주요 협상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외교 활동
- 12.1~7간 WTO·EU·노르웨이 방문(농림부장관)
11.28~12.4간 캐나다·멕시코 방문(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대외 대책〉

-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6개 수입국(NTC 그룹)과 공조하여 수출국들의 공세에 공동대응
-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협상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자주 방문하여 협의채널 유지
- WTO·OECD 등 협상관련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 입장을 설명, 이해 제고